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17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2
[참고]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7.

3. 회부연월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종합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에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급당 적정 학생 수 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4조는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¹⁾.

이는 지역별로 인구분포, 학령인구, 학교시설, 통학환경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학급 당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한 것인데 지역별·지역유형별 학급당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음.

1)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5년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1.6명으로,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20명에 근접해 나가고 있지만, 지역별·지역유형별로는 그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됨.

<연도별·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현황(각 년도 4월 기준)>

(연도별 4월 기준,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24.7	24.0	23.4	23.0	22.8	22.3	22.1	21.9	21.6
초	22.3	22.3	22.2	21.8	21.5	21.1	20.7	20.0	19.4
중	26.4	25.7	25.1	25.2	25.4	25.0	24.6	24.5	24.9
고	28.2	26.2	24.5	23.4	23.0	22.6	22.9	23.4	23.4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활용)

<지역별·지역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2025년 4월 기준)>

(단위: 명)

구분		2024년				2025년			
		초	중	고	전체	초	중	고	전체
전체(평균)		20.0	24.5	23.4	21.9	19.4	24.9	23.4	21.6
지역 유형	대도시	20.9	24.4	23.0	22.2	20.2	25.1	23.1	22.1
	중소도시	21.9	26.5	24.5	23.6	21.2	26.6	24.5	23.3
	읍지역	19.5	23.7	22.4	21.2	18.7	24.0	22.6	20.9
	면지역	11.3	16.4	19.7	13.8	10.7	16.6	19.8	13.5
	도서벽지	7.8	13.6	16.8	10.4	7.3	13.7	16.7	10.1
서울		20.8	23.8	23.7	22.3	20.1	24.8	23.8	22.2
부산		20.9	24.4	21.1	21.8	20.3	25.0	21.0	21.6
대구		21.7	24.8	22.8	22.7	21.1	25.4	23.2	22.7
인천		21.3	26.2	23.5	22.9	20.7	26.3	23.6	22.7
광주		19.8	23.6	24.0	21.7	19.0	23.9	23.6	21.3
대전		19.5	24.0	21.5	21.0	18.7	24.2	21.3	20.6
울산		20.9	24.9	23.6	22.5	20.5	25.2	23.9	22.5

구분	2024년				2025년			
	초	중	고	전체	초	중	고	전체
세종	19.8	23.9	23.5	21.5	19.3	24.6	23.9	21.5
경기	21.8	26.9	25.5	23.9	21.2	26.9	25.5	23.6
강원	16.0	22.6	21.4	18.7	15.1	22.8	21.6	18.3
충북	18.4	22.9	23.1	20.5	17.8	22.8	23.0	20.2
충남	17.9	24.2	24.0	20.7	17.2	24.1	24.1	20.3
전북	16.2	22.2	21.5	18.8	15.3	22.2	21.4	18.4
전남	15.7	21.5	19.9	18.0	15.0	21.6	19.9	17.7
경북	18.4	21.2	20.6	19.6	17.7	22.4	20.7	19.6
경남	19.2	24.1	22.9	21.2	18.3	24.0	23.0	20.8
제주	20.6	25.2	25.7	22.8	19.3	25.4	25.6	22.1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활용, 분교장 제외)

□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음.

□ 학급당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학생의 건강 및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교육기본법」 제4조제3항2)에서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실현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³⁾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계획 수립 관련 사무의 소관 주체, 현행 법률 체계와의 관계 등에 관한 고려가

2)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필요해 보임.

참고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내용(기준을 정하는 주체, 적정 학생 수 명시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⁴⁾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안 심사 시 함께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해당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5

4)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참고 8페이지

참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김주영의원안 (2202316)	김민전의원안 (2205158)	강명구의원안 (2203061)	민형배의원안 (2207577)	김문수의원안 (2208361)
제24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고 ,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학교급별 또는 학교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학교급별 또는 학교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등) ① 국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 기준을 초과한 학교 및 학급	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기준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 로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	--